

December 16, 2015

리베이트 관련 법률 개정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2015.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관심을 끌었던 리베이트에 관한 규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에도 제공자와 수수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의료인 등이 아닌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판례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번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의료기기 도매상이 병원의 실무담당자들을 통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4566 판결〉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의료기관은 통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영조물에 불과하고 의료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결국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되므로, 굳이 법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를 처벌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법개정 실익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전 법률에 의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모르게 의료기관 종사자가 경제적 이익을 건네 받아 종국적으로 의료기관(엄밀하게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종사자는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처벌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CSO 등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 규제

리베이트에 대한 관계당국의 규제가 강화되자, 영업대행사(이하 'CSO') 등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전달하는 행태가 업계에 확산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던 가운데, 당초 발의안에서는 CSO, 계열회사와 다른 사업자 등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리베이트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간접정범의 형태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처벌하는데 문제가 없고, 계열회사 및 다른 사업자의 의미 및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삭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비록 발의안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이는 종전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CSO 등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도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내부통제의 강화 필요

공정위가 2007년경 제약산업에 대해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래로 매년 크고 작은 리베이트 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제도의 측면에서도 규제의 폭과 강도가 해마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왔습니다. 이에 많은 회사들이 compliance 제도를 도입하여 내부통제를 충실화해 오고 있는데,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는 돌이킬 수 없는 조류이므로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통한 마케팅 정책을 포기하는 한편 실질적인 compliance 제도 운영을 통해 일탈적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이덕구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613 | E-Mail. tklee@shinkim.com |
| ● 손지연 변호사 | TEL. 02 316 1682 | E-Mail. jyson@shinkim.com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